

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제 호 | 의결사항 |
| 의결 연월일 | 20 . . . (제 회) | |

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 . . . |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담배사업법 개정('25.12.23일 공포, '26.4.24일 시행)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종전 “연초의 잎”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“연초나 니코틴”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. 이에 니코틴의 화학적 의미를 분자식 및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, 그 광학이성질체, 혼합물, 염, 착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후에너지환경부, 식약처,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2026.6.25.~8.4.

대통령령 제 호

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10(니코틴의 범위) 법 제2조제1호의 니코틴은 분자식 $C_{10}H_{14}N_2$ 로서 3-(1-methyl-2-pyrrolidiny)pyridine의 결합구조를 갖는 물질(그 염류, 착물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신설></p> | <p>제4조의 10(니코틴의 범위) 범 제 2조제1호의 니코틴은 분자식 C₁₀H₁₄N₂로서 3-(1-methyl-2-pyrrolidinyl)pyridine의 결합구조를 갖는 물질(그 염류, 착물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 |